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8. 26.(월) 11:00 < 8.27.(화) 조간 > 배포 2024. 8. 26.(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으로 외투 촉진과 투자 안보 모두 잡는다

-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행정청의 직권심의 도입,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 보호 강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8월 27일(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 5가지이다.

첫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하였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다섯째,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4070)
		담당자	사무관	박찬서 (044-203-40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